

【별표 1】 채용 결격사유

『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』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
6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7의2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『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』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
【별표 2】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산점 (매 전형 가산점)

구 분	장애인	기초생활수급자	차상위계층	다문화가정	한부모가족
배 점	5점	5점	5점	5점	5점
확인서류 (면접시 징구)	장애인 증명서	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차상위 계층 확인서	가족관계증명서	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산점 중 2개 이상 해당 시 하나만 반영하며, 취업지원대상자(법정사형) 가산점은 별도 부여